

2022. 11.

# 2022년 자체감사 결과 공개자료

[애린양로원, 풀꽃세상요양원]



김 제 시  
기 획 감 사 실

# 처분요구목록

애린양로원, 풀꽃세상요양원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총 건수	합 계(지적)		시정 · 주의	주의	훈계	개선	권고	통보	비고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5	-	130	1	1	-	1	-	2	애린
6	-	150	1	3	-	-	-	2	풀꽃

##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처분요구서 [별첨 1]

(단위 : 건, 천원, 명)

연번	건 명	처분요구			비고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계	11건		0	280	
1	초과근무 수당 지급 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 부족	개선			애린
2	공공요금 예산 집행 관련	통보			
3	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및 계약서류 미비	시정 · 주의		130	
4	수의계약 공개 누락	통보			
5	회계관계직원 부재중 인장 날인	주의			
1	업무추진비(축의.부의금) 집행 부적정	주의			풀꽃
2	공공요금 예산 집행 관련	통보			
3	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및 계약서류 미비	시정 · 주의		150	
4	수의계약 공개 누락	통보			
5	회계관계직원 부재중 인장 날인	주의			
6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일련번호: 1]

#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애린요양원
제 목	초과근무 수당 지급 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 부족
행정상 조치	업무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간외근무의 명령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고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개인별 초과근무 일별 사전 초과근무 명령에 따라 승인된 시간 내 근무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일 초과근무한 내역을 초과근무 내역서에 개인별로 기재하여 초과근무 명령권자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애린양로원은 같이 5년간 총 465백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면서 시간외수당 관리를 위한 출퇴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문등록시스템 등 없이 수기 대장(초과근무 확인대장)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애린양로원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외수당 관리를 위한 출퇴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문등록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일련번호: 2]

#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애린양로원
제 목	공공요금 예산 집행 관련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9호)」의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 2. 일반운영비(201목) / 2-2. 공공운영비(201-02)를 보면,

- ✓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세칙 제60조(요금 등의 납부방법)에 의하면,

- ✓ 매월 정기적으로 인터넷(e-mail 청구) 또는 휴대폰을 통해 요금 청구하는 경우 200원을 감액한다.
- ✓ 매월 예금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요금의 1%를 감액하되, 1,000원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애린양로원은 2017. 10 ~ 현재 공공요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기

요금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면, 전기요금 총 21,174,790 원 중 할인액 72,000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여 예산절감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애린양로원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3]

#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애린양로원
제 목	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및 계약서류 미비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
재정상 조치	130,000원
내 용	

##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준공신고서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애린양로원은

- ① ‘□□□□□ 공사’ 등 3건의 공사에 대해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②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애린양로원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미징수한 인지세(수입인지) 130,000원을 즉시 소환하기 바랍니다.(시정·주의)

[일련번호: 4]

#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애린양로원
제 목	수의계약 공개 누락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르면 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시설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정보 공개 시 ‘공개 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애린양로원은 2017. ~ 2022. 기간 동안 수의 계약한 2건에 대하여 감사일(2022.1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애린양로원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5]

#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애린양로원
제 목	회계관계직원 부재중 인장 날인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 제28조에 의하면 지출원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애린양로원에서는 회계 관계 직원이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의서상 대리인의 인장이 아닌 부재중 담당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지출 관련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애린양로원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6]

# 김 제 시

기관·부서명	플꽃세상요양원
제 목	업무추진비(축의·부의금)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등에 드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 집행)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소속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축의·부의금품 지급대상자는 소속 상근직원으로서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축의·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풀꽃세상요양원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직원에게 축의·부의금을 지급하면서 1건당 집행한도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5명에게 축의·부의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풀꽃세상요양원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7]

#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플꽃세상요양원
제 목	공공요금 예산 집행 관련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9호)」의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 2. 일반운영비(201목) / 2-2. 공공운영비(201-02)를 보면,

- ✓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세칙 제60조(요금 등의 납부방법)에 의하면,

- ✓ 매월 정기적으로 인터넷(e-mail 청구) 또는 휴대폰을 통해 요금 청구하는 경우 200원을 감액한다.
- ✓ 매월 예금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요금의 1%를 감액하되, 1,000원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플꽃세상요양원은 2017. 10 ~ 현재 공공요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기요금 자

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면, 전기요금 총 80,880,330원 중 할인액 72,000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여 예산절감 노력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풀꽃세상요양원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8]

#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플꽃세상요양원
제 목	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및 계약서류 미비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
재정상 조치	150,000원
내 용	

##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준공신고서 등을 통지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풀꽃세상요양원은

- ① ‘□□□□□ 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대해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②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풀꽃세상요양원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미징수한 인지세(수입인지) 150,000원을 즉시 소환하기 바랍니다.(시정·주의)

[일련번호: 9]

# 김 제 시

기관·부서명      풀꽃세상요양원  
제            목      수의계약 공개 누락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르면 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시설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정보 공개 시 ‘공개 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풀꽃세상요양원은 2017. ~ 2022. 기간 동안 수의 계약한 1건에 대하여 감사일(2022.1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풀꽃세상요양원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10]

# 김 제 시

기관·부서명      풀꽃세상요양원  
제            목      회계관계직원 부재중 인장 날인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 제28조에 의하면 지출원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풀꽃세상요양원에서는 회계 관계 직원이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의서상 대리인의 인장이 아닌 부재중 담당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지출 관련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풀꽃세상요양원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11]

#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플꽃세상요양원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121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광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공과금 :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7 기타운영비 : 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류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플꽃세상요양원에서는 45건, 9,575,400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플꽃세상요양원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